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 “도 단독-분할납 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3kW) 설치비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납부 하는 도 단독_분할납 사업을 위한 “분할납 사업자” 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 3. 28.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도 단독_분할납 사업이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선정한 분할납 사업자와 신청자(주택 소유자)간 계약을 통해 신청자의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5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분할금을 징수하는 사업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03.28. ~ 2025.11.28.
- 지원설비 : 3kW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 사업대상 :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 1,000가구
 - 최대 10개 분할납 사업자를 선정하고, 업체별 사업물량은 배정
 - 단, 사업규모 및 사업자 수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분할납 사업에 참여한 가구 당 1,972천원 보조
 - * 주택태양광 3kW 설치시 도비보조금

3

분할납 세부 내용

○ 총 사업비 상한액 : 4,931천원

- 주택용 태양광(3kW) 총 사업비는 상한액 4,931천원을 넘을 수 없음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분할금 결정 : 총 사업비 상한 4,931천원(부가세 포함) 이내에서 신청자와 분할납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월 분할금을 결정

< 분할금 상한액 >

구분	총 사업비 상한	경기도 보조금	도민 자부담금	
			분할금 총액	월 분할금
단독주택	4,931천원	1,972천원	2,959천원	분할기간 5년
	100%	40%	60%	49,317 원/월

○ 분할기간 : 5년 (최소 3년 이상 의무 분할납부)

- 분할기간 동안 소유권 및 성능관리·하자보수등 책임은 분할납 사업자에게 있음
- 최소 3년 이상 분할납부를 유지, 3년 이후 중도금 일시 상환은 가능

○ 지원기준 : 3kW 주택용 태양광 기준 도비 1,972천원 지원

- 설비용량의 110%(3.3kW)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주택 태양광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단독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주택’ 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단독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공동지분인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로 신청(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등)인 주택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4

분할납 사업자 모집 및 선정**□ 모집개요**

- 모집대상 : '25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용 태양광 참여기업(최대 10개)

< 신청요건 >

- 협력사를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 대표를 사업자로 지정(협력사는 1개 사업자와만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자 및 협력사(시공 및 A/S)는 전기공사업 등록증 보유 필수
- 연대보증사의 경우 자산 60억원 이상 및 등급 A- 이상인 업체에 한하며, 사업자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제외 가능
- ※ 자체 자금조달의 경우, 당해연도 신청 물량의 투자비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증빙자료 별첨(자체 자금 확보가 우선이며, 금융권 조달은 최대 50% 미만임)

- 모집기간 : 2025. 3. 28.(금) ~ 4.11.(금) 오후 17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참여제안서(첨부1) 및 붙임 첨부서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10108) 에너지사업팀(031-996-2557)

□ 평가 및 선정

- 분할납 사업자가 제출한 참여제안서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분할납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70점 이상의 사업자를 적격업체로 하며, 적격업체 중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 필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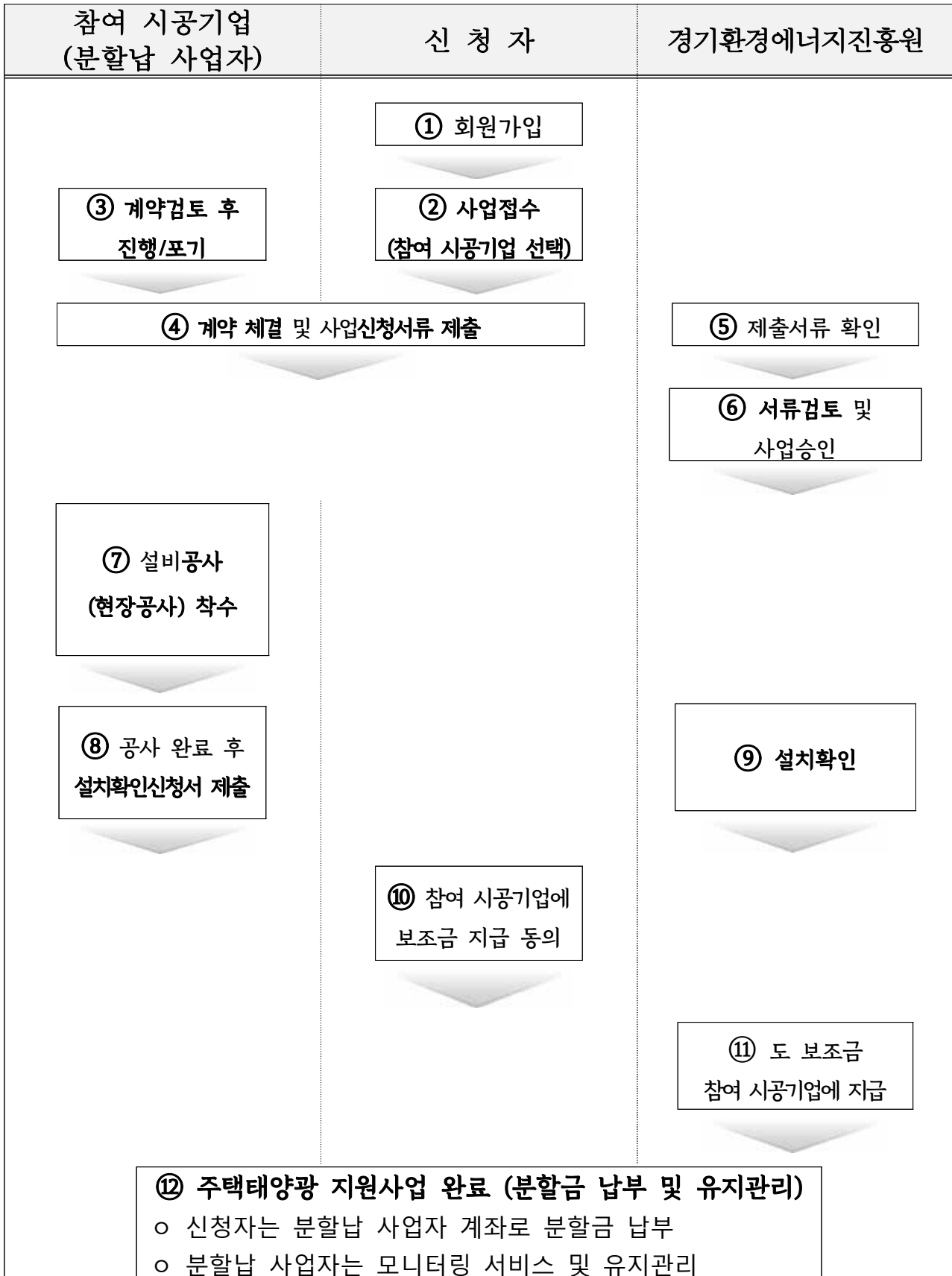
- 분할납 사업자의 PPT자료 전면에 별도 첨부할 사항
 - (수익성)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 (안정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비율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규모, 지원내용, 모집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

분할납 사업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공고 내용 미숙지, 제출 서류 오기 책임은 해당 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
- 분할납 사업자는 신청자와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함
- 분할납 사업자는 신청자와 동 공고의 분할금 상한액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분할금은 분할납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태양광 분할납 사업의 초기 설비 설치비는 분할납 사업자가 부담
- 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이전 소유권은 분할납 사업자에게 있으며, 약정기간의 종료 후 신청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분할납 사업자는 약정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음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주택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분할납 사업자와 신청자의 계약은 표준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참고하여 서로 합의하여 계약하여야 함
-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KS인증제품으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 공고내용 및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신청자가 경기도 재생에너지 인증서(G-REC)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RTU 부착을 위한 합체 설치 등 본 시범사업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함

별첨	첨부양식 목록
-----------	----------------

연번	자료명	비고
1	참여제안서	양식
1-1	사업계획서	양식
1-2	연대보증서	양식
1-3	표준계약서	예시
2	분할납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2-1	시공실적 총괄표	양식

[첨부1] 도 단독-분할납 사업 참여제안서(양식)

도 단독-분할납 사업 참여제안서

분할납 사업자 법인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자 본 금				부채비율			
예상 사업물량		가구		예상 분할금(월)		(원/월)	
기업신용평가등급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연대보증사 법인명		단독으로 참여시 생략		시공업체 컨소시엄 업체수		업체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위와 같이 경기도 주택태양광 도 단독-분할납 사업자 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분할납 사업자명 (인)							
연대보증사명 (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분할납 사업자 사업계획서 1부(첨부 2-1) 2. 분할납 사업자 및 컨소시엄업체 사업자등록증(공통), 전기공사업등록증(공통)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분할납 사업자) 4. 기업회계감사 보고서 1부 (분할납 사업자 또는 연대보증사)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분할납 사업자 또는 연대보증사) * 연대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서 1부 제출(첨부 2-2) 6. 분할납 사업에 적용할 계약서 1부(업체별 양식에 의함, 첨부 2-3, 2-4)							

[첨부1-1] 사업계획서(양식)

도 단독_분할납 사업계획서

1.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평가 시 제출

☐ 재원조달의 안정성

- 23년 또는 24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요약내용 및 자체재원 및 금융상품 활용 등 분할납 사업 재원조달 계획 기재

2. 사업운영능력

※ 분할납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첨부2) 참고

☐ 경기도 주택태양광 시공실적 및 A/S 전담기업 선정실적

- 실적 총괄표(첨부 2-1)

☐ 분할금 할인율 정책

- 신청자의 자부담금(2,959천원)의 할인율 적용

3. 사업계획

☐ 사업 수요자 확보계획

- 수요자 확보 전략
- 신청자-분할납 사업자 간 계약조건
- 해당 설비(모듈, 인버터 등) 제조사 및 세부사양 등
- 시공품질 향상 방안

☐ 발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방안

- 발전시스템 파손 대비방안
- 기타 발전시스템의 정상운행을 위한 방안

[첨부1-2] 연대보증서(양식)

연 대 보 증 서

회 사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 채무자 ○○○가 경기도 주택태양광 분할납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할 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 ○○○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이행할 것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연대보증인 ○○○는 채무자 ○○○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분할납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 ○○○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제3조(특약) 연대보증인 ○○○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제4조(관할) 본건에 관한 소송은 채무자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고, 별도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본 계약서를 1부 송부한다. 다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본 연대보증서 혹은 공정증서 기타 문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

연대보증인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20 년 월 일

※ 보증인 자필서명 및 연대보증용 인감증명 첨부 확인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중

수취 및 확인자	부 서		성 명		(인)
----------	-----	--	-----	--	-----

[첨부1-3] 도 단독-분할납 표준 계약서(양식)

경기도 주택태양광 분할납 표준 계약서 (2쪽 중 제 1쪽)

계약당사자	신청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ex) 1111년 1월 1일		
			주 소	ex)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455			
			연 락 처	010-1234-1234	FAX		
	분할납 사업자	(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AX	
계약내용	설치용량	[kW]	모듈	() [Wp] × () [EA]		인버터	[kW]
	공사명	ex) 25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설치공사			사업비 총액	일금₩	원
	설치장소	ex)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도 보조금	일금₩	원
	설치기간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분할금	일금₩	원/월
	분할기간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용전 점검 승인일로부터 ()년			의무 상환기간 (3년 이상)	()년	
	분할금 입금계좌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문조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신청자”와 “분할납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태양광 발전설비 분할납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금 등의 지급) ① “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대가로 약정한 월 분할금을 매월 10일에 “분할납 사업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초기 분할금을 포함한 분할금 및 비용 등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 “분할납 사업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상기 기재 이외의 방식으로 입금한 경우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할납 사업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신청자”는 “분할납 사업자”와 약정한 최소 의무 상환기간 동안 분할금을 지급 후에 “분할납 사업자”에게 남은 잔금에 대하여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의 준공) ① “분할납 사업자”는 약정한 설치기한 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점검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분할납 사업자”는 설치기한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준설치공사 이외의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 추가공사비용은 “분할납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보관과 사용방법) ① 태양광 발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정부보조 사업과의 차별을 위해 “분할납 사업자”는 “신청자”가 육안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위치에 “분할납 사업자”의 연락처를 포함하여 분할납 사업으로 설치한 발전설비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사로 인해 이전 할 경우 이전 및 이전비용은 “분할납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분할납 사업자”의 지시 및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본 문 조 항
(계속)**제5조 (형상·변경)**

“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다른 부동산이나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개조, 형상 변경 또는 성능·기능·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할납 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유지관리)

- ① “분할납 사업자”는 기본사업기간 및 연장사업기간 동안 태양광발전설비의 성능 유지 및 관리·하자보수·부품교환 등 유지관리의무를 “분할납 사업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다만, “신청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 ② “분할납 사업자”는 기본사업기간 및 연장사업기간 동안 “신청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체계에 대한 보험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30조의2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유권의 유보 및 이전)

- ① 본 계약기간 중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분할납 사업자”에게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태양광발전설비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분할납 사업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 ② 약정기간의 종료 후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신청자”에게 이전 가능하다. 계약기간 종료 후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분할납 사업자”의 비용으로 철거·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인수)

- 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신청자”는 제3자에게, “분할납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 “분할납 사업자”, 새로운 계약인수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자” 또는 “분할납 사업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제3자 또는 다른 사업자는 “신청자” 또는 “분할납 사업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한다.
- ③ “분할납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다른 사업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시키지 못할 경우 “신청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지정하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 본 계약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분할납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지연손해금)

“신청자”가 분할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한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0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분할납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해지)

- ① 최초 계약 이후 연장은 소비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② “신청자”와 “분할납 사업자”는 쌍방이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신청자”와 “분할납 사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여부의 응답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설치 목적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완료 후 “신청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신청자”는 잔여계약기간 대여료의 (00)%를 “분할납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분할납 사업자”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 혹은 회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상기 제 10조 ④항 및 ⑤항은 참고 제시안이며, 실 계약시 ‘신청자’와 ‘분할납 사업자’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발생이나 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주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본 계약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특수조건을 삽입할 수 있다.
특 약 조 항	제1조 (지체상금) “분할납 사업자”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한내에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제2조 (상계거래 시설 부담금) 한국전력의 상계거래 시설부담금은 “분할납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계약의 승계) “분할납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분할납 사업자”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승인을 거쳐 컨소시엄 내 타사업자 또는 타 분할납 사업자가 “분할납 사업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을 지속 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분할납 사업자명) (직인)	

※ 본 표준계약서는 분할납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용임을 밝힘

[첨부2] 분할납 사업자 선정 및 평가기준

□ 평가지표에 따른 분할납 사업자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배 점																															
①경영상태 (30)	○ 신용평가등급 ¹⁾ 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계 량 20	20																														
	<table><tr><th colspan="5">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기준</th><th>배점</th></tr><tr><td colspan="5">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td><td>20</td></tr><tr><td colspan="5">BB+, BB0, BB-</td><td>15</td></tr><tr><td colspan="5">B+, B0, B-</td><td>10</td></tr><tr><td colspan="5">CCC+ 이하</td><td>0</td></tr></table>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점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20	BB+, BB0, BB-					15	B+, B0, B-					10	CCC+ 이하					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점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20																																
	BB+, BB0, BB-					15																																
	B+, B0, B-					10																																
CCC+ 이하					0																																	
○ 재원조달 계획(' 23년 또는 ' 24년 기업회계보고서 등)						비계량	10																															
○ (설치) 경기도 주택태양광 시공 실적						계 량	20																															
<table><tr><td>건수(가구)</td><td>없음</td><td>1~30</td><td>31~99</td><td>100~499</td><td>500 이상</td></tr><tr><td>배점</td><td>0</td><td>5</td><td>10</td><td>15</td><td>20</td></tr></table> ※ 최근 3개년(2022년 1월 1일 ~ 공고일) 시공실적 제출내역 인정 ※ 경기도 직접형은 진흥원에서 개별기업 실적 확인								건수(가구)	없음	1~30	31~99	100~499	500 이상	배점	0	5	10	15	20																			
건수(가구)	없음	1~30	31~99	100~499	500 이상																																	
배점	0	5	10	15	20																																	
②사업운영 (50)	○ (분할납) 한국에너지공단 및 경기도 대여사업						계 량	10																														
	<table><tr><td>건수</td><td>없음</td><td>1~200</td><td>201~400</td><td>401~600</td><td>601~800</td><td>1,000건 이상</td></tr><tr><td>배점</td><td>0</td><td>2</td><td>4</td><td>6</td><td>8</td><td>10</td></tr></table> ※ 경기도 대여사업은 진흥원에서 개별기업 실적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 시공실적								건수	없음	1~200	201~400	401~600	601~800	1,000건 이상	배점	0	2	4	6	8	10																
	건수	없음	1~200	201~400	401~600	601~800	1,000건 이상																															
	배점	0	2	4	6	8	10																															
	○ (사후관리) AS전담기업 선정실적(한국에너지공단)						계 량	10																														
	<table><tr><td>선정횟수</td><td>없음</td><td>1~2</td><td>3~4</td><td>5~6</td><td>7~8</td><td>9 이상</td></tr><tr><td>배점</td><td>0</td><td>2</td><td>4</td><td>6</td><td>8</td><td>10</td></tr></table>								선정횟수	없음	1~2	3~4	5~6	7~8	9 이상	배점	0	2	4	6	8	10																
선정횟수	없음	1~2	3~4	5~6	7~8	9 이상																																
배점	0	2	4	6	8	10																																
○ (분할금) 분할금 할인율 정책						계 량	10																															
<table><tr><td>할인율</td><td>없음</td><td>2%</td><td>4%</td><td>6%</td><td>8%</td><td>10%</td></tr><tr><td>배점</td><td>0</td><td>2</td><td>4</td><td>6</td><td>8</td><td>10</td></tr></table> ※ 신청자의 자부담금(2,959천원)의 할인율 적용								할인율	없음	2%	4%	6%	8%	10%	배점	0	2	4	6	8	10																	
할인율	없음	2%	4%	6%	8%	10%																																
배점	0	2	4	6	8	10																																
③사업계획 (20)	○ 사업 수요자 확보계획 - 사업 수요자 확보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10																														
	○ 발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방안 - 발전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비계량	10																														
④우대가점 (3)	○ 분할납 사업자(컨소시엄) 소재지 또는 지점의 위치가 경기도내 인가?						계 량	3																														
계								100 (103)																														

※ 계량지표 외 비계량지표는 탁월(10), 우수(8), 보통(6), 미흡(4), 저조(2)로 평가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현재 그 이후인 것에 한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미제출시 또는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포함)에는 0점 처리 함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

3) 분할납 사업자 또는 연대보증사 중 가장 높은 회사의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며, 분할납 사업자가 아닌 연대보증사의 신용평가등급관련 서류로 제출할 경우 제출회사의 연대보증서(첨부 2-2)를 제출하여야 인정됨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일 현재 그 이후인 것에 한함

[첨부2-1] 실적 총괄표

(주)○○○ 실적 총괄표

구분	업체명	사업연도	사업유형	총 가구수	총 설치용량(kW)
주택태양광 시공실적	A 사	‘22,’ 23, ‘24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200	600
	B 사	‘24	경기도 직접형	200	600
	C 사	‘18,’ 19, ‘21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	100	300
	D 사	‘23, ‘24	경기도 대여사업	100	300
	:				
	:				
	총 계			600	1,800
구분	업체명	선정연도			
A/S 전담기관 선정실적	:				
	:				
	:				
	:				
	:				
	총 계	총 00 회			

* 위 기재된 실적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 대여사업 설치확인서·실적확인서, A/S 전담기업 인증서·협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경기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중복 산정하지 않음